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7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박상웅 · 정동만 · 조은희
강승규 · 박준태 · 김상훈
고동진 · 김대식 · 이종욱
신동욱 · 주진우 · 이상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초기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여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고용·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을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하는”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을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축소한”을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제품등을 직접 생산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 중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를 “그 밖에 첨단산업,”으로, “안정에”를 “안정 등 국가 경제·산업의 안전 유지 및 발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내복귀를 통하여 제3호”로, “기업”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나. 해외진출기업이 제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내복귀기업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그 조사 결과의 관련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6의3.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

제7조제1항제2호 중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
부령으로”를 “국내 투자 규모 및 고용 창출 효과, 공급망 안정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로,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을 “적합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
설”을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제품등의 생산 위탁”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설·증설”을 “신설·증설, 제품등
의 생산 위탁”으로 한다.

4. 국내 다른 기업과 제품등의 위탁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 다른 기업과 위탁
계약을 완료할 것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내복귀 초기
단계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설비투자, 이전비용 및 인력 재배치 비
용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중 “자동화 생산설비투자”를 “로봇 기반 자동화 생산설비

및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공급망 안정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공급망 안정 또는 국가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여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재정·금융·세제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입지지원)”을“(입지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구조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복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시설·재정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국내복귀”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u></p> <p>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경우</p> <p><신 설></p> <p>나. <u>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하는-----</u> ----- -----<u>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u> -----.</p> <p>가. ----- -----<u>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제품등을 직접 생산하는-----</u></p> <p>나. <u>해외진출기업이 제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u></p> <p>다. <u>그 밖에 첨단산업,-----</u> -----<u>안정 등 국가 경제</u></p>

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
· 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
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
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 산업의 안전 유지 및 발전에

4. -----국내
복귀를 통하여 제3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수행하는 기업을-----.

<삭제>

<삭제>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국내복귀기업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그 조사 결과
의 관련 정책 반영에 관한 사
항

6의3.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출형 지원 전략

7. (생략)

③ ~ ⑤ (생략)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생략)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국내 투자 규모 및 고용 창출 효과, 공급망 안정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적합할---

3.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제품등의 생산 위

서

3. (생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

탁-----

3.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 다른 기업과 제품등의 위탁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 다른 기업과 위탁계약을 완료할

것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신설·증설, 제품
등의 생산 위탁-----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 ① ~ ③ (생략)

<신 설>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제12조(자금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내복귀 초기 단계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설비투자, 이전비용 및 인력 재배치 비용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

-----로
봇 기반 자동화 생산설비 및 스마트공장 구축-----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공급망 안정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공급망 안정 또는 국가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제13조(입지지원) ① ~ ③ (생략)
<신 설>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여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재정·금융·세제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구조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복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시설·재정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